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92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3. 5. / 손정자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 2026.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
- 2)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3)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4) 협력체계 구축, 포상(안 제6조부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무분별한 일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기관과 시민의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시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재정적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조례안은 지역 행사·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93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3. 5. / 이경숙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 2026.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2) 조성·관리, 참여 지원 규정(안 제4조~제6조)
- 3)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쌈지공원 평가단 규정(안 제7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인 쌈지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도시 내 유희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은 생활권 녹지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4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3. 5. / 박윤옥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 2026.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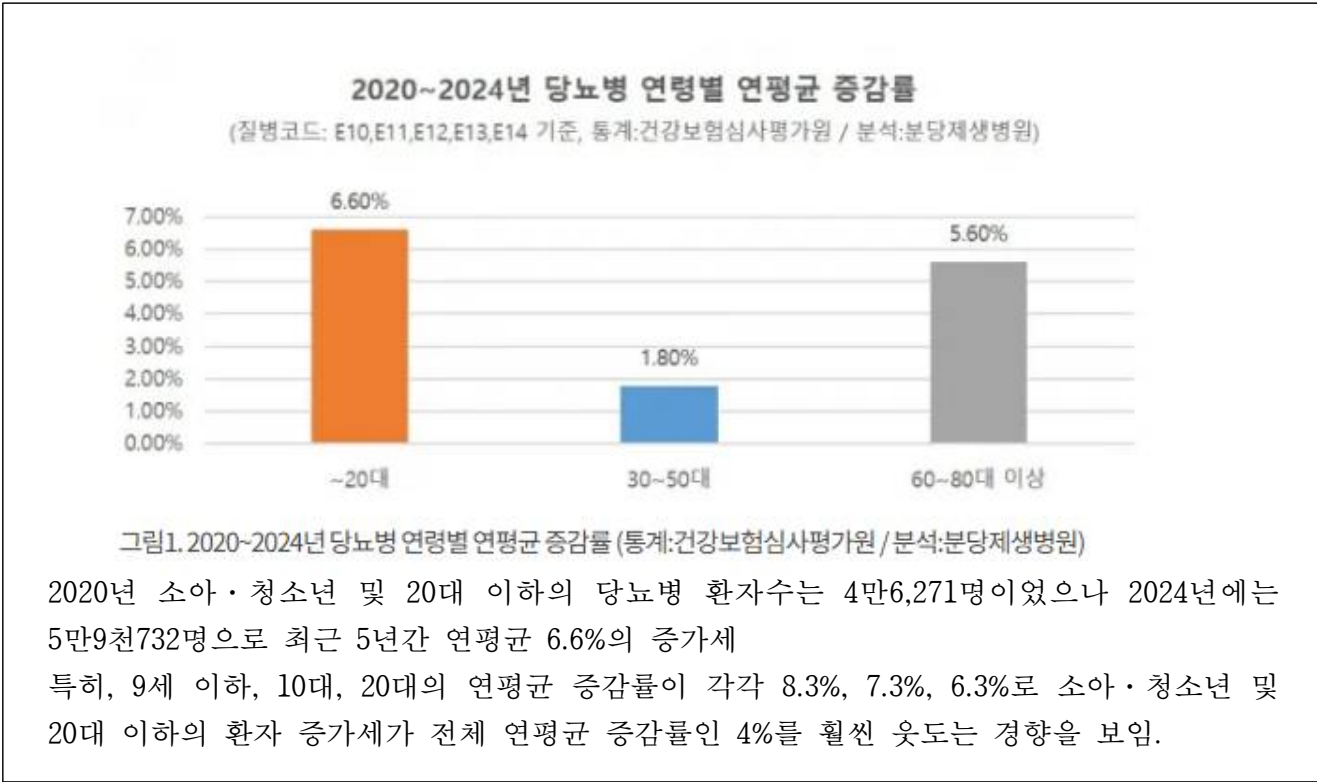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3) 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2020년 소아·청소년 및 20대 이하의 당뇨병 환자수는 4만6,271명에서 2024년에는 5만9천732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6%의 증가세를 보이며 소아·청소년기의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소아·청소년에 대한 당뇨병 관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도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인식개선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4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6.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명을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2)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제16조, 제18조~제22조)
-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설치 대상 확대(안 제2조·제15조)
-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 규격 다양화(안 제9조, 별표1)
-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규정 명확화(안 제17조)
- 6)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확대(안 제18조)
- 7)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기준 현실화(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량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5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3. 5.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6.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7조, 제20조의3, 제35조)
- 2) 별표 서식 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분 삭제 (안 별표 4, 5)
- 3) 이불전용 수거봉투 조례 반영 (안 별표 4, 5, 6)
- 4)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배부대장 추가 (안 제7조, 별지 제3호, 제4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및 배부대장 서식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관련 사항을 별도 조례로 이관함에 따른 별표 정비, 이불 전용 수거봉투 규격 및 가격 반영 등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초과 판매 시 지정취소 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함께 반영하는 등 폐기물 관리제도의 운영 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